##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0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김성회・이기헌・백승아

윤종군 • 진선미 • 민병덕

이인영 · 고민정 · 서미화

한창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 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 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90일까지"를 "선거일 전 90일까지(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                       |
|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 <u>선거일 전 90일까</u>     |
|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지(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        |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
| 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        | 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검      |
| 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 <u>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u> |
| 地方議會議員選舉  地方自治          |                       |
| 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        |                       |
| 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         |                       |
| 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        |                       |
| 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
|                         |                       |
|                         | <u>.</u>              |
|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       | 1                     |
| 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                       |
|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                       |
|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        |                       |
| 된 地方公務員. <u>다만, 「정당</u> | <u>다만, 대통령, 국회</u>    |
|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     |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생략)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敎員

8. • 9. (생략)

② ~ ⑤ (생 략)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 원,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 의원의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 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 연구위원 ·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 한 사립학교의 교원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